

##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우리 구 구로동 714-1번지 일대 남구로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6년 8월 27일  
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

### 1. 제한 지역

| 명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위치             | 면적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남구로2 역세권 장기전세주택<br>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| 구로동 714-1번지 일대 | 11,486㎡ |

### 2. 제한 사유

- 가.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  
나. 건축 및 토지 분할 등의 행위제한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

### 3. 제한 내용

#### 가. 건축물의 건축

-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
- 「건축법」 제19조에 따른 주택으로의 용도변경
- 「건축법」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
- 「건축법」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
-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 행위

#### 나. 토지분할

### ※ 제한 적용 예외

- 가. 개발행위제한 고시 이전 건축허가 접수되었거나 건축허가·신고 등을 받아 진행 중인 사업
- 나.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대수선
- 다.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

### 4. 제한 기간 : 고시일로부터 3년

※ 단,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·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일까지

### 5. 지형 도면 :



※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

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도시개발과(☎02-860-2693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